’21년 시설물유지관리업 실적전환 안내

「**시설물유지관리업 업종전환 세부기준**」(국토교통부고시 제2021-932호) 및 국토교통부 시설물실적전환 업무처리 요청에 따라 ‘21년 시설물유지관리업 실적에 대한 전환 신청방법 및 기간을 다음과 같이 공지합니다.

- 다 음 -

○ **전환대상 : ’21년 시설물실적을 전환하고자 하는 시설물유지관리업자**

- ’22.5.31까지 ‘16~’20년 실적을 **기 전환한 업체**는 **‘21년 실적만 전환(1개년 실적)**

* ’22.6.1 이후 **신규전환**하는 업체는 **‘17~’21년 실적을 전환(5개년 실적)**

○ **신청방법 및 제출서류**

■ **신청방법** : **키스콘 홈페이지**에서 실적**내역정보를 직접 기재**하여 신청

* 기재항목 : 공사명, 기성금액, 공종, 용역여부 등

■ **필수 제출서류** : **시설물관리협회에서 발급한 ‘21년 건설공사 실적내역표**

* 개별 실적의 내역(공사명, 공종, 당년도기성금액, 계약년월일 등)이 포함된 서류만 인정

○ **신청기간 : 5월 23일 ~ 6월 3일**

* 5.23부터 실적내역 입력, 6.1부터 필수 제출서류 첨부하여 신청완료

○ **실적전환 처리 주요사항**

■ **안전점검 등 용역실적은 전환 불가**

- **건설공사실적만** 전환신청해야 하며 공사명에 용역, 안전점검 등의 용어가 들어간 경우 **건설공사임을 증빙할 수 있는 시공내역서, 물량산출표** 등을 추가로 첨부, 국토교통부에서 이를 검토하여 인정여부 결정

■ **공종 기재 재확인**

- 실적전환 방식 중 **’가산‘**방식을 선택한 업체의 경우 공종(토목 또는 건축)에 따라 전환금액의 변동이 크므로 공종 적합성 검토 필요

- 고의 또는 실수로 공종을 잘못 기재한 건은 실적전환 보류 예정이므로 공사내용과 공종이 불일치하는 경우가 없도록 정확한 확인 후 공종 기재

■ **전환 업종, 주력분야, 실적배분 비율은 변경 불가**

- 「**시설물유지관리업 업종전환 세부기준**」에 따라 기확정된 전환 업종/주력분야/실적배분 비율대로 실적전환 예정

○ **실적전환 처리방법 및 일정**

■ 신청자가 작성한 실적내역과 제출서류를 기준으로 용역포함 여부, 공종 기재오류 등 신청내역의 적정여부를 검토하여 오류가 없는 신청건은 단기간내에 실적전환하고(1차전환), 오류가 발견된 건은 추가 확인 후 실적전환(2차전환)

* 오류가 발견된 부적합건은 추가증빙 자료 제출 또는 신고 내역 수정

■ 실적전환이 완료되면 실적전환 신청시 기재한 이메일로 결과 통보 예정 (전환 당일 또는 익일 각 협회로 전환데이터 전송)

(1차 전환) 6월 3~9일

- 검토결과 부적합건이 전혀 없는 신청건에 대해서는 순차적으로 최단기간내 실적전환

* 6.3 ~ 6.9까지 검토 즉시 실적전환 예정

(2차 전환) 6월 10일 이후

- 검토결과 부적합건이 발견된 신청건에 대해서는 해당건에 대한 증빙자료 제출 및 신고내역 수정이 완료된 이후 실적전환 처리

- 추가증빙자료 등을 국토교통부에서 검토하여 적합여부 결정

※ **참고 1~2** 내용을 반드시 확인한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.

참고1 실적내역 상세입력 방법

■ 신청내역은 첨부된 **'건설공사 실적내역표'와 일치**해야 하며, 실적내역표에 **용역실적**이 포함된 경우 **해당 용역실적도 기재하되** 신청자가 용역실적임을 직접 표기하고 **실적전환에서는 제외됨**

- 용역실적은 건설공사실적이 아니므로 전환실적에서 제외, '참고2'의 실적전환 인정범위 참조

- 다만, 실적내역표에는 용역으로 기재되었으나 실제로는 건설공사인 경우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별도로 첨부하여 제출(자료 미제출하거나 불명확한 자료 제출시 해당 건은 실적전환에서 제외)

■ 실적내역표에 없는 실적내역 기재시 불인정

■ 공종 기재시 공사내용과 공종이 일치해야 함

- 예를 들어 공종 입력시 빌딩보수인데 '토목'으로, 고속도로 보수인데 '건축'으로 입력한 경우 불인정
  (빌딩 → '건축' 공종, 고속도로 → '토목' 공종으로 기재)

<'21년 실적 내역정보 입력 예시>

NO	기성 년도	공사명	공종	당년 기성액(천원)	용역 여부	증빙서류 (건설공사증빙)*
1*	2021	영천댐 보수보강공사	건축	300,000	-	
2**	2021	우림빌딩 점검용역	건축	500,000	-	건설공사 시공내역서 (물량산출표 포함).PDF
3***	2021	영덕 체육관 정밀안점점검 용역	건축	100,000	Y	

*** (1번 예시)** 공사명을 보면 '**댐**' 공사이므로 **토목** 공종으로 기재하는 것이 적합
건축 공종으로 기재시 **전환 보류 및 재검토 대상**

**** (2번 예시)** 공사명에 용역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건설공사인 경우 **시공내역서** 등 건설공사임을 명확히 증빙할 수 있는 자료 추가 제출(**물량산출표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** 외에는 불인정)

***** (3번 예시)** 용역실적인 경우 **용역여부에 체크**표시(용역실적은 전환실적에서 제외됨)

참고2 실적전환 인정범위(용역실적 제외)

○ 「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부칙」(제31328호, 2020.12.29.) 제6조(시설물유지관리업의 업종전환에 관한 특례) 및 「시설물유지관리업 업종전환 세부기준」 제5조(종전 실적에 관한 인정 특례)에 따른 시설물유지관리업 실적전환은 동법 시행령 별표1의 **시설물유지관리업 업무내용에 해당하는 건설공사실적**이여야 하며, **안전점검 등 용역실적은 해당되지 않음**

○ 국토교통부에서는 건설공사 실적에 해당되지 않는 **'시설물 (정기)안전점검 용역'** 및 **'민간투자사업 유지관리 용역'** 등의 용역실적을 시설물유지관리업종의 건설공사 실적에서 제외하도록 대한시설물유지관리협회에게 시정조치토록 요구하였음

○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시설물유지관리협회에서 발급한 '건설공사 실적확인서' 및 '건설공사 기성실적내역표'에 용**역실적이 포함된 사례가 발견**되어 이를 전환실적에서 제외토록 **실적전환 처리절차 강화**

- 다만, 기존 **시설물업의 실적** 중 용역실적에 대하여는 실적관리를 소관하는 대한시설물유지관리협회에서 조치할 사항으로 금번 실적전환 처리와는 무관

* 따라서 실적전환시 키스콘(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)을 통해 제출·검토된 내용에 따라 **시설물협회에서 관리하는 시설물업의 실적 또는 시평**이 **변동되는 것은 아님**